응용과학대학 장학내규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응용과학대학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응용과학대학에 적용한다.

제3조 (장학위원회)

- ①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 ② 장학위원회는 응용과학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장학위원회의 간사는 응용과학대학 행정실장으로 한다.
- ④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장학정책의 수립
 -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3.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① 장학금의 종류는 교외장학, 교내장학, 기타장학으로 구분하며, 교내장학금의 종류,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1]과 같다.

- ② 교외장학의 지급기준 등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취득하고 성적이 2.0 이상인자로 하며, 전과(전출)예정자는 제외한다.
- ④ 장학금심사 해당학기에 본 대학 전공과목을 3과목이상(밝은사회장학(단대학생)은2과목이상),1학년은 전공교양 교과목 6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 ⑤ 밝은사회장학(해외연수/해외인턴십,GC Summer Program),우정장학의 경우 제3,4항의 지급기준적용을 예외로 할수 있다
- ⑥ 교외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본 내규에 따른다.

제5조(장학생 선발)① 본 대학장은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며 장학생 선발 기준은[별표1]과 같다.

② 동점자의 경우 전공이수학점수, 전체이수학점수, 연소자 순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제한) ① 다음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장학생인 자가 학칙, 학생생활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 2. 성적경고자 및 졸업유예자
- 3. 학사지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 4. 휴학자

제7조(이중 지급 중지) ① 본 내규에 규정된 각종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부자 자장학, 실기B장학(단대우수학술), 밝은사회장학(단대봉사,해외연수/해외인턴십,GC Summer Program), 해외관련프로 그램(해외탐방,해외봉사,해외연수,해외인턴십,국제교류처 Faculty-Led Program등) 장학은 예외로 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기한) 장학금 지급기한은 학기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학의 특성에 따라 학년말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등록) ① 장학생은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본 내규에 없는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0년 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본 내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본 내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본 내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본 내규는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장 학 명	지 급 기 준	선발절차	지급액
성적우수장학	- 수석, 차석, 평점4.0 이상인 자	-학과별로 성적순에 의하 여 선발 -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해 선발함	-수석: 등록금전액 -차석: 등록금반액 -4.0이상자: 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모범장학	- 평점 3.5이상인자	- 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장학위원회심의에 의하여 선발함	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우정장학 (가계곤란)	- 가정형편곤란자(부모실직, 소년소 녀가정, 저소득대상자, 기타 천재 지변 등으로 생계곤란자나 등록 금 마련이 어려운 재학생 등) - 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심의에 의 하여 선발함		등록금 이하
실기B장학 (단대우수학술)	- 재학중 연구에 특별한 업적을 성취한 학생에게 수여 - SCIE(SCOPUS포함)논문 게재 및 학술진흥재단등재 논문게재(등록 포함), 국내외특허취득(인증)서류, 기타 증빙서류	- 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장학위원회심의에 의하여 선발함	[별표3]기준에 의함
	-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학과의 추천을 받은 학술동아리		장학위원회 결정 연1회
밝은사회장학 (단대봉사)	- 학생 중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학과장 또는 학장이 추천한자 - 사회봉사, 해외봉사, 효행봉사 - 홈페이지 유지 관리 등	- 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장학위원회심의에 의하여 선발함	등록금 이하
성적향상장학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50 이상 2.0이하인 자로서 당해학기 3.5 이상 취득자	- 성적향상 장학금 신청서 를 제출한 자 중 장학 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선발	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밝은사회 장학 (해외연수/해외인턴십)	- 연수목적, 외국어능력, 직전학기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	- 신청서 제출자 중 심사 에 의하여 선발 함	등록금 이하
밝은사회장학 (단대 학생)	- 학생회 간부,학과별 학생장 및 학년대표등	- 학생회 추천	등록금 이하
밝은사회장학 (GCSummer Program)	- 국제교류처 GC수강자 - 수강료 일부 지원		장학위원회 결정
기타장학	- 학생지원센터의 규정에 의함	- 학생지원센터의 규정에 의함	학생지원센터의 규정에 의함

장학종류별 제출서류

장 학 명	제 출 서 류		
성적우수장학	해당없음		
모범장학	장학금신청서, 자기소개서		
우정장학 (가계곤란)	장학금신청서, 학과장추천서, 자기소개서 및 아래 해당서류 ① 생활보호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1부 ② 저소득 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원(부,모) 각 1부 ※ 소득증빙자료의 종류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소득금액이 없을 경우 : "소득이 없다" 사실증명원(세무서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본인)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부,모,본인)각 1부 ※ 지방세 부과 사실이 없을 경우 "지방세 납부 사실이 없음" 증명원 발급 ③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양친유고 본인가장 -부모장애자(3급이상) -기타 생활고 확인서		
실기B장학 (단대우수학술)	장학금신청서, 학과장추천서, SCIE(SCOPUS포함)논문 및 학술진흥 재단등재논문 게재(등록포함), 국내외 특허취득(인증)서류, 기타증빙 서류 장학금신청서, 추천서, 동아리활동관련증빙서류		
밝은사회 장학 (단대봉사)	장학금 신청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자기소개서		
성적향상장학	장학금신청서, 자기소개서		
밝은사회 장학 (해외연수/해외인턴십)	- 해외연수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외국어능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밝은사회장학 (단대 학생)	해당없음		
밝은사회장학 (GC Summer Program)	해당없음		
기타장학	별도공지		

실기B장학(단대우수학술) 지급기준

1. 실기B장학(단대우수학술)중 연구실적의 지급기준은 아래의 장학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논문 1편당 지급기준은 아래의 장학금액의 기준을 넘지 못한다.

가. 국내외 특허취득은 인증만을 구분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구 분	장 학 금 액		ш ¬	
	주 저 자	공동저자	비 고	
SCIE	₩1,000,000 이하	₩500,000 이하	응용수학과의 경우 SCOPUS를 SCIE급 으로 인정	
SCOPUS	₩600,000 이하	₩300,000 이하		
학진 등재지	₩300,000 이하	₩150,000 이하	응용수학과의 경우 등재후보지 인정	

※ 국제1급 학술지 : SCIE, SSCI, A&HCI

2. 실기B장학(단대우수학술)중 우수학술동아리의 경우 지급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